

서울고등법원

1997. 1. 28. 판결 선고	인
1997. 1. 28. 원본 영수	

제 11 민사부

판 결

사 건 96나41993 부동산매도청구

원고, 항소인 부성연립재건축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 종 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회 목

피고, 피항소인 1. 김 영 진

2. 박 인 영

3. 하 행 길

4. 정 철 교

5. 정 순 화

6. 정 순 자

7. 김 쌍 용

8. 신 용 문

9. 엄 재 숙

10. 김 민 진

11. 김 민 자

12. 전 준 기

13. 김 진 배

14. 최 재 구

15. 신 정 원

16. 이 태 백

17. 김 말 선

18. 채 중 기

피고 1, 2, 5, 7, 8, 9, 12, 14, 15, 16, 1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창 권

변 론 종 결

1996. 12. 24.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1996. 9. 13. 선고 96가합346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영진은 별지 제1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인영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하행길, 정철교, 정순화, 정순자는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쌍용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신용문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엄재숙은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민진은 별지 제3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민자는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전준기는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진배는 같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재구는 별지 제4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신정원은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태백은 같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말선은 같은 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채중기는 같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이 유 1. 원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수정 또는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원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내용

가. 수정하는 내용

원심 판결 7면 7행의 “68인”은 “78인”의 명백한 오토티므로 이를 “78인”으로 수정한다.

나. 추가하는 내용

원심 판결 12면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시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위에서 본 절대 다수에 의한 결의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①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概算)액, ③ 위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하며, 위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구분소유자에게 위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재건축 결의시 위 각 필요적 결의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들을 포함한 재건축 반대 구분소유자들에게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면서 위 각 필요적 결의 사항의 통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 28.

재판장 판사 손지열 _____

판사 김윤기 _____

판사 박철 _____